의안번호	2213648
의 뢰 인	김기표의원
회 답 일	2025.11.28.
추계번호	25D564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청구 사유)	법원의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그 외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청구 사유)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 현행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그 요건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외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에

규정되고 이에 따른 심판절차 진행 건수 증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증가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최근 10년간 헌법소원 청구건수 및 2025년 기준 헌법재판소 재판활동운영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1] 2015~2024년 헌법소원 청구건수

(단위: 건)

구분	68조1항 헌법소원[1]	68조2항 헌법소원[2]
2015	1,325	488
2016	1,379	542
2017	1,987	602
2018	1,819	589
2019	2,062	631
2020	2,472	744
2021	2,201	585
2022	2,322	459
2023	1,935	617
2024	1,788	698

자료: 헌법재판소

[표 2] 2025년 기준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도 예산(조정액 기준)
헌법재판업무지원	267(소계)
- 공동부·전속부 연구토론 및 운영지원비 등	195
- 연구회 운영비 등	73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비	221(소계)
-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69
- 헌법재판 운영지원경비	152
기록물 관리 및 보존	143(소계)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10(소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30(소계)
합계	671

자료: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